

제 2994호	화순군공보		발행 일 : 2021년 1월 28일 발행 인 : 화 순 군 수 발행 처 :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 화순군 기획감사실																					
차										례														
고 시																								
화순군 고시 제2021-12호					도로명주소 부여 및 폐지 고시 1																			
공 고																								
화순군 공고 제2021-159호					2021년 표준(단독) 주택가격 공시 2																			
화순군 공고 제2021-160호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 공시송달 공고 4																			
화순군 공고 제2021-161호					2021년도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수행자 선정 공고 6																			
화순군 공고 제2021-162호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8																			
화순군 공고 제2021-170호					화순군 맘(Mom) 편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9																			
화순군 공고 제2021-179호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 행정처분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1																			
화순군 공고 제2021-184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2																			
화순군 공고 제2021-185호					화순군 화순학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및 화순군 화순학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23																			
화순군 공고 제2021-186호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 송달 공고 43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 란																								

도로명주소 부여 및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5조제2항에 따라 우리군 소재 건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 1. 27.

화 순 군 수



○ 도로명주소 :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오성로 358 외 8건

종전 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 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 고
(※부여 6건, 폐지 3건)			불		임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행복민원과(☎ 061-379-3455)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 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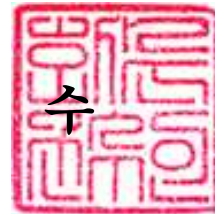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 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2021년 표준(단독)주택가격 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 표준(단독)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21. 1. 25.

화 순 군



1. 2021년 표준(단독)주택의 적정가격 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21년 1월 1일

나. 표준(단독)주택 수 : 230,000호

다. 공시사항

표준(단독)주택의 소재지 및 지번, 지목, 건물용도 및 구조(지붕), 층수, 동수, 대지면적 및 건물연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용적률,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 토지의 용도제한(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형상, 도로·교통상황, 지세, 지리적 위치 및 주위환경, 가격(개별 호당 내용 생략)

라. 열람장소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및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 또는 표준(단독)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

2. 이의신청 방법

가. 2021년 표준(단독)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4호 서식인 이의신청서(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비치)에 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또는 부동산공

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함

다. 국토교통부의 표준주택 소유자 의견제출 기간(2020.12.18.~2021.1.6.)에 의견을 제출하지 못한 표준주택 소유자도 이의신청할 수 있음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령」 제26조제1항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 사망에 따른 상속 이전등록 신청에 관한 안내문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6일

화 순 군 수



1. 공 고 명 :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1. 1. 26.~ 2. 10.
3. 공시송달 대상

연번	자동차등록번호	사망자 (소유자)	주 소	반송사유
1	20소4413	나*돈	전라남도 화순군 동면 경현길 ***-*	보관기간 경과
2	전남89가7381	정*두	전라남도 화순군 춘양면 회화길 ***-***	보관기간 경과
	전남89가8884			
3	84무5692	이*성	전라남도 광양시 진상면 지랑길 ***	보관기간 경과
	광주75가7445			

4. 공고 내용

자동차 보유자(상속자)께서는 아래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 이전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5조제1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법칙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5. 구비 서류

- 자동차등록증
- 사망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각 1부
- 상속 포기동의서(상속포기자의 도장 날인) 1부
- 상속 포기자 각각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복지카드) 사본
- 상속자의 자동차 보험가입증명서
- 상속자 신분증
- 대리인 신청 시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상속자 도장 날인), 상속자 신분증 사본

※ 자동차세 체납 및 2011. 7. 6. 이후 압류가 있을 시 상속 이전 불가

6.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화순군 재난안전과 차량등록팀(061-379-346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속 이전등록은 전국(시·군·구)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긴급] 2021년도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수행자 선정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수행자 선정기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순군에서 시행하는 2021년도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조사 등의 수행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5일

화 순 군



1. 사업개요

- 가. 사 업 명: 2021년도 화순군 지적재조사사업
- 나. 시 행 자: 화순군수
- 다. 사업위치: 화순군 춘양면 석정지구 외 4개 지구(1,387필지, 758천㎡)
- 라. 추진기간: 착수일로부터 2022년 12월말 까지
- 마. 주요내용: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 수행(과업지시서 참조)
- 바. 사 업 비: 금267,271천원(부가가치세 포함)

사. 사업수행방식: 단독수급 또는 공동수급 방식

- 1)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며, 공동수급으로 참가 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2)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구성원의 상호 협의에 의하여 선임하도록 하며, 공동수급 협정서에 공동수급체 간 참여비율을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함

- 아. 공고기간: 2021. 1. 25.(월) ~ 2021. 2. 3.(수), (10일간)
- 자. 결과발표: 2021. 2. 8. 예정

2.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수행자 평가서 제출 안내

가. 측량·조사 등의 수행자 참가자격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 2)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나. 참가등록 및 수행자 평가자료 제출

1) 제출기한: 2021. 1. 3.(수)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2) 제출방법: 방문접수(※ 우편 및 전화 등 접수 불가)

3) 제출서류

가) 지적재조사 측량 조사 등의 수행자 선정 참여 신청서 1부(공동수급 시 공동수급협정서 포함)

나) 지적재조사 측량 조사 등의 수행자 선정 평가서 1부

4) 제출처: 화순군청 행복민원과 지적재조사팀(☎061-379-3451~2)

3. 평가 방법

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수행자 선정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24호)」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기준 및 절차 준용

나. 수행자 평가결과 평점이 최고점인 자를 수행자로 선정하며, 동점자의 경우 평가항목 중 지적재조사 측량 조사 수행계획서, 최근 3년 이내 지적재조사측량 수행실적, 지적측량기술자, 측량장비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1개 수행자 단독으로 신청한 경우 평가결과 평점이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 선정)

4. 기타사항

가.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관련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제출자료 중 발주기관, 관계기관 또는 협회에서 증명 및 확인 또는 입증하여야 할 서류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며, 증명이 확인되지 않은 사본, 유효기간이 지난 서류 및 자체서류는 평가에서 제외함

다. 제출된 신청서 및 자료에 위조, 변조, 허위 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함

라. 해당 수행자 선정건과 관련하여 청탁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수행자 선정에서 제외함

마. 평가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업체선정에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음

바. 총 사업비, 사업기간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화순군 행복민원과 지적재조사팀(☎061-379-345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60조 및 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주소(거소)불명, 이사, 수취인불명, 장기간 방치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 1. 25.

화 순 군 수



1. 공 고 대 상 : 주·정차 금지 위반 대상자 명단 등 : 별첨
2. 공 고 기 한(의견제출기한) : 2021. 1. 25. ~ 2021. 2. 19.(25일)
3. 의 건 제 출 처 : 화순군청 재난안전과 교통안전팀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 / ☎061-379-3785)
4.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자문서포함), 구두진술(증명 할 수 있는 증거자료 제출)
5. 기타 안내
 -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한 경우는 과태료 금액의 20% 감경 되므로, 공시송달 공고 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50%가 감경됩니다. 다만 체납된 과태료가 있는 경우 감경 되지 않으며, 법령상 감경이 여러가지인 경우라도 사전 통지서에 의한 의견진술기간 내 자진납부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 거듭 감경되지 않습니다.
- 1)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2)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3급까지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5) 미성년자

※ 의견 제시 기한 내 자진 납부코자 하는 경우와 기타 의문 난 사항은 화순군청 재난안전과 교통안전팀(☎ 061-379-378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불법 주정차 사전통지서 반송이력 1부.

화순군 공고 제2021-170호

「화순군 맘(Mom)편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월 28일

화 순 군 수



화순군 맘(Mom) 편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화순군 맘(Mom)편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맘편한 택시 운행대상 마을의 추가 신설과 맘편한 택시 조례개정을 반영한 조문 및 읍면 행정구역 명칭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 개정을 반영한 조문과 문구의 수정(안 제1조 등)

- “맘(Mom)편한”을“맘편한”으로 약칭 용어로 정비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 **맘편한 택시 운행 대상마을 추가 등 (안 제2조 별표)**

- 시행규칙 제2조 별표의 “남면”을 “사평면”으로 “북면”을 “백아면”으로 변경.
- 제2조 별표의 백아면에 서유 2구(동유마을)를 운행 대상마을로 추가 신설.

○ **조례 개정을 반영한 시행규칙의 중복 내용 조항 삭제 및 조문 수정(안 제4조)**

- 개정조례로 신설 규정한 시행규칙 제4조의 이용대상 규정을 삭제하고 동 조문의 “(이용대상)”을 “(이용신청)”으로 수정하며 관련 조문을 정비.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 2. 8.(월)까지 화순군수(참조: 재난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기간 : 2021. 1. 28. ~ 2021. 2. 8.(11일간)

※ 단축사유 :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 **의견제출 사항**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yuskke@korea.kr

2) 주 소(일반우편) : (우)58112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
재난안전과 교통안전팀

3) 팩 스 : 061-379-3810

4. 그 밖의 사항

이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재난안전과 교통안전팀
(☎061-379-378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화순군 맘(Mom) 편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
례 시행규칙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입법예고명	화순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의 견 내 용				
화순군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2021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화 순 군 수 귀 하				

화순군 규칙 제 호

화순군 맘(Mom) 편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 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화순군 맘(Mom) 편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Mom) 편한 택시 운행”을 “(Mom) 편한 100원 택시 운행”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택시”를 “100원 택시(이하 “맘편한 택시”라 한다)”로 한다.

제3조 중 “맘(Mom) 편한”을 “맘편한”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이용신청) 「화순군 맘(Mom) 편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이용대상자는 별지 제3호서식과 별지 제4호의 서식의 맘(Mom)편한 택시 이용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 지역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고 접수증을 교부받아 이용한다.

제5조제1항 중 “맘(Mom)편한 택시 사업자”를 “맘편한 택시 사업자”

로, “효도택시”를 “**맘편한 택시**”로, “맘(Mom)편한 택시 이용권”을 “**맘편한 택시 이용권**”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맘(Mom)편한”을 “**맘편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읍·면의 경우는 긴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해당 읍·면이 아닌 인근 읍·면의”를 “**읍·면임에도 해당 읍·면의 상주택시가 아닌 다른 읍·면의 상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주택시가”를 “**상주 택시가**”로, “상주택시 등”을 “**읍·면의 상주 택시 등**”으로 한다.

별표 중 일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과 별지 제4호서식 중 이용권/자부담액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개정 2016.12.30., 2019.10.15.>

맘(Mom)편 한 100원 택시 운행 대상 마을(제2조 관련)

읍면별	행정리	마을명	비고
화순읍 ~ 동북면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사평면 (구. 남면)	대곡1구	청룡	
	대곡2구	쌍용	
	검산2구	화산	
	운산리	운산	
	벽송2구	상포란	
	원리1구	원동	
	장전1구	장전	
	장전2구	영동	
		오룡	
동면 ~ 이서면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백아면 (구. 북면)	방리	방촌	
		양지	
	다곡리	웅곡	
	용곡리1구	용촌	
	용곡리 3구	상곡	
	노기리	노기	
	서유2구	동유	<신설>

화순군 맘(Mom)편한 100원 택시 이용 지원신청서

(취약계층 등 대상자용)

1. 신청자

주 소	화순군 읍면	로·길·리	
성명(성별)		수혜구분	<u>기초수급자/차상위/다문화</u>
연 락 처		거주기간 (화순군)	

2. 증빙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수혜(기초수급자, 차상위)증명서

※ 지원조건 : mam편한 택시 지원 대상마을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
차상위, 다문화가정

변동사항(수급권 변동, 이사 등)이 있을 시 연락바라며, 기타 부정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을 받았을 경우 회수 등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와 같이 화순군 mam편한 택시 이용대상자로 신청합니다.

[illegible]

화순군수(읍·면장) 귀하

화순군 맘(Mom)편한 택시 이용 지원신청 접수증
(취약계층등 대상자용)

주 소	화순군 읍면 로·길·리		
성명(성별)		연락처	
지원기간		이용권 /자부담액	면 소재지 2매 / 100원 읍 소재지 1매 / 1,500원

화순군 맘(Mom)편한 100원 택시 이용 지원신청서

(임신부 및 영유아·보호자 대상자용)

1. 신청자

주 소	화순군 읍면	로 · 길 · 리	
성명(성별)		수혜구분	<u>임신부, 영유아·보호자</u>
연 락 처			
신청기간		거주기간 (화순군)	

2. 증빙서류 : 임신확인서(출산증명서),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가족관계 증명서등

※ 지원조건 : 매회 택시 지원 대상마을에 거주하는 임신부
또는 영(유)아 보호자

변동사항(출산, 이사 등)이 있을 시 연락바라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을 받았을 경우 회수 등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와 같이 화순군 mam편한 택시 이용대상자로 신청합니다.

[illegible]

신청자 : (인)

화순군수(읍·면장) 귀하

화순군 맘(Mom)편한 택시 이용 지원신청 접수증

(임신부 및 영유아·보호자 대상자용)

주 소	화순군 읍면 로·길·리		
성명(성별)		생년월일	
지원기간		이용권 /자부담액	면 소재지 2매 / 100원 읍 소재지 1매 / 1,500원

신 · 구조문 대비 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순군 맘(Mom) 편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맘(Mom) 편한 택시 운행 대상 마을을 정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u>(Mom) 편한 100원 택시 운행</u> ----- ----- -----.
제2조(대상마을) ① 맘(Mom) 편한 택시의 운행 대상 마을은 별표와 같다.	제2조(대상마을) ① ----- -- <u>100원 택시(이하 “맘편한 택시”라 한다)</u>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운행일지) 맘(Mom) 편한 택시 운전자는 운행시마다 별지 제1호서식의 운행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탑승자 중 한사람을 대표 탑승객으로 기록하고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3조(운행일지) <u>맘편한</u> ----- ----- ----- ----- -----.
제4조(이용대상) 맘(Mom)편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은 제2조의 대상마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단, 승용·승합·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제4조(이용신청) 「화순군 맘(Mom) 편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이용대상자는 별지 제3호서식과 별지 제4호의 서식의 맘(Mom)편한 택시 이용 지원신

는 제외한다.

1. 65세이상 노인

2. 관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입
신부, 초등학교 취학 전 영유
아와 보호자

3.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
하는 이용대상자는 별지 제3호
서식과 별지 제4호의 서식의 맘
(Mom)편한 택시 이용 신청서
를 작성하여 거주 지역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고 접수
증을 교부받아 이용한다.

제5조(비용 신청 및 지급) ① 맘
(Mom)편한 택시 사업자는 매
월 초에 효도택시 탑승 비용 지
원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
성하여 이용권자로부터 받은 맘
(Mom)편한 택시 이용권과 전
산으로 출력된 요금 영수증, 운
행일지를 첨부하여 군수(읍·면
장)에게 탑승비용 지원을 신청
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청서를 작성하여 거주 지역 읍

·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고
접수증을 교부받아 이용한다.

제5조(비용 신청 및 지급) ① 맘편
한 택시 사업자-----

----- 맘편한 택시 -----

----- 맘

편한 택시 이용권-----

-----.

②·③ (현행과 같음)

제6조(기타) ① 맘(Mom)편한 택
시 운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택시 사업자와 별도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상주 택시가 있는 읍·면의
경우는 긴급 또는 그 밖의 사유
로 해당 읍·면이 아닌 인근 읍
·면의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
운행 대상 마을까지 이동한 거
리에 대한 요금은 이용권 소지
자가 부담한다.

③ 상주택시가 없는 면의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인근 상주택
시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공차
요금을 포함하여 보상(개인지급
이용권에 한함)해 줄 수 있다.

1. ~ 6. (생략)

④ (생략)

제6조(기타) ① 맘편한-----

-----.

② ----- 읍·면임에
도 해당 읍·면의 상주 택시가
아닌 다른 읍·면의 상주 ----

-----.

③ 상주 택시가 -----
----- 읍·면
의 상주 택시 등-----

-----.

1. ~ 6.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공 시 송 달 공 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 행정처분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주재 등의 사유로 우편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1. 2. 2. ~ 2021. 2. 17.(15일간)
2. 공고내용: 운전면허 취소에 따른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 행정처분 통지 반송 공시송달 공고
3. 근거법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 2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성 명	주 소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역	반송사유
전*환	화순군 화순읍 자*샘로 **~*	음주만취운전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	보관기관 경과
임*빈	화순군 화순읍 광*로***, ***~***	음주만취운전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	보관기관 경과
조*태	화순군 백아면 노*길 ***~*	음주만취운전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	수 취 인 불 명
이*춘	화순군 화순읍 만*로 **	인피교통사고 야기후 조치 및 신고 불이행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	보관기간 경과
이*용	화순군 능주면 영**길 ***~*	인피교통사고 야기후 조치 및 신고 불이행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	보관기관 경과

5.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라남도 화순군 재난안전과 (☎061-379-3784,팩스061-379-381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1. 26

화 순 군 수



화순군 공고 제2021-18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촉구서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위반에 따른 우편물(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부과고지서, 체납고지서, 독촉고지서, 압류고지서)을 해당 대상자들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이사감, 장기방치, 반송투합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 1. 28.

화 순 군 수



1. 공고내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관련 우편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박○○(전라남도 화순군 사평면 사평길) 등 143건(별첨 참고)
3. 공고기간: 2021. 1. 28. ~ 2021. 2. 14.(17일간)
4. 문 의 처: 화순군청 재난안전과 (☎061-379-3463)
5. 안내사항

가. 현재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계약을 체결하시고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소유 차량의 의무보험 미가입(지연가입) 사실이 없는 경우 보험 계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입증명서, 폐차증명서 등)를 화순군 재난안전과 차량등록팀(☎061-379-3463, FAX 061-379-3810)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에 따라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며,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가산금 및 증가산금이 부과되며, 무보험 차량 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화순군 화순학사 운영 및 지원 조례」 및 「화순군 화순학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월 28일

화 순 군 수



화순군 화순학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및
화순군 화순학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미래를 선도할 유능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와 참여 지방자치단체간 협약으로 건립된 서울 소재 공공기숙사 일부의 사용권을 서울특별시로부터 양수하고 그 양수한 공공기숙사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그 시행에 필요한 입사생 선발 기준, 입사생 입·퇴사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화순군 화순학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가. 협약 체결, 명칭 및 위치, 기능(안 제2조 ~ 제4조)

- 공공기숙사 양수비, 운영비, 위탁운영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공공기숙사의 사용권 양도·양수 및 이용에 관한 협약」을 서울특별시장과 체결함을 명시
- 명칭 및 위치
- 공공기숙사의 기능

나. 시설 운영의 위탁·위임(안 제5조)

- 시설의 운영은 협약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위임하여 위탁운영 가능토록 명시

다. 입사생의 선발기준 및 입사생의 부담금(안 제6조 ~ 제7조)

- 입사생의 자격, 선발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및 선발 제한 대상 명시
- 입사생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금액은 서울특별시와 공공기숙사 운영 협약에 참여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하도록 함.

라. 재정운영 등(안 제8조)

- 재정운영은 군비, 입사생 부담금 등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학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군비로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수탁자의 보조금 신청 및 정산 서류를 기한내 제출토록 함

마. 군수와 수탁자간 권리·의무 관계 등 (안 제9 ~ 제12조)

- 위탁운영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 학사 운영과 관련되는 사항 중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하는 사항.
- 군수의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권과 시정 등 조치할 사항 명시.
- 수탁자가 학사운영에 관해 군수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할 사항 명시
- 수탁자에 대한 위탁해지 사유 발생 시 위탁해지하거나 서울특별시시장에게 위탁해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수탁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 명시

바. 조례 규정내용 외 협의처리(안 제13조)

-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 외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시장과 협약에 따라 공공기숙사 운영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구성 운영되는 실무협의회 의결에 따라 처리함.

사. 잔존재산 처리 (안 제14조)

- 공공기숙사 폐지로 잔존재산이 있을 경우 군 세입으로 처리

아. 타 조례 준용(안 제15조)

- 학사 운영에 따른 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름.

자. 경과조치(부칙안 제2조)

- 이 조례 시행 전에 군수와 서울특별시장이 체결한 협약과 입사생 선발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간주.

<화순군 화순학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가. 입사생 선발 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 (안 제2조 ~ 제7조)

- 입사정원, 입사기간, 선발기준, 모집공고, 입사신청 등 세부 방법.
- 입사생 결정 통지 및 등록에 관한 세부 방법 및 절차에 관한 내용 명시.

※ 관련 내용 별도 표시 : 별표 1,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 4호서식

나. 입사생의 수칙 및 퇴사 조치 (안 제8조 ~ 제 9조)

- 입사생의 수칙에 대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질서유지와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입사생 중 퇴사 사유가 발생할 경우 퇴사 조치할 수 있도록 함.

다. 경과조치(부칙안 제2조)

- 이 규칙 시행 당시 입사된 사람은 이 규칙에 의해 선발된 것으로 간주.

3. 의견제출

이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 2. 17.(20일간)까지 화순군수 (참조: 총무과 평생교육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hewo1501@korea.kr

2) 주소(일반우편) : (우)58112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
총무과 평생교육팀

3) 팩스 : 061-379-3360

4. 그 밖의 사항

이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총무과 평생교육팀
(☎061-379-305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화순군 화순학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화순군 화순학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규칙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입법예고명	화순군 화순학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및 화순군 화순학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규칙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의 견 내 용				
화순군 화순학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및 화순군 화순학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규칙안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2021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화 순 군 수 귀 하				

화순군 화순학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 발전에 기여하고 미래를 선도할 유능한 인재 양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와 참여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으로 건립된 공공기숙사 일부에 대한 사용권을 서울특별시로부터 양수하고, 그 양수한 공공기숙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서울특별시장과 공공기숙사의 양수금 및 운영비, 위탁운영 등을 포함하여 공공기숙사의 사용권 양도·양수 및 이용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제2조의 협약에 따라 양수한 공공기숙사의 명칭은 “화순학사”(이하 “학사”라 한다)라 한다.

② 학사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명로1길 131에 둔다.

제4조(기능) 학사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사생의 수학에 따른 숙박 편의 제공
2. 입사생의 생활지도 및 면학분위기 조성
3. 그 밖에 입사생의 복지를 위한 사항

제5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학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2조의 협약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위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효율적인 학사운영을 위해 수탁기관 등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입사생의 자격 및 선발) ① 입사생의 자격은 선발 공고일을 기준으로 부모 또는 보호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하며, 선발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서울특별시 소재 4년제 이상 대학교와 대학원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2. 경인권 소재 4년제 이상 대학교와 대학원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3. 서울특별시 및 경인권 소재 2년제 이상 대학교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4. 서울특별시 및 경인권 외의 지방 소재 대학교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이 서울특별시 및 경인권 소재 2년제 이상 대학교에 1학기 이상 교환 학생 또는 학업·취업과 관련하여 6개월 이상 연수나 실습을 받아야 하는 경우
5. 서울특별시 및 경인권 소재 입시전문학원에 등록하여 다음 연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 예정인 입시 준비생. 이 경우 입소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6. 그 밖에 군수가 입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사생 선발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퇴학, 정학 및 휴학 중인 사람. 다만, 휴학생 중 선발 해당 연도 1학기에 등록예정자는 입사할 수 있다.
2. 법정 감염병 등으로 공동체 생활에 부적합한 사람
3. 대학원생 중 직장에 재직 중인 사람
4. 입사생 학사 수칙의 퇴사요건에 해당되어 퇴사한 사람

③ 그 밖의 입사생의 선발방법, 입사정원 등 세부적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입사생의 부담금) ① 군수는 학사를 이용하는 입사생에게 입사비 및 사료 등(이하 “입사생 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징수할 수 있다.

② 입사생 부담금은 서울특별시와 공공기숙사 운영 협약에 참여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제8조(재정운영 등) ① 학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군비 및 입사생 부담금 등으로 한다.

② 군수는 학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보조금 신청서와 다음연도 운영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보조금 정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되돌려 주어야 한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보조금 및 시설물을 관리하는 데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이 조례 및 규칙, 그 밖의 관계된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지도·감독사항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사업승인 등) 수탁자는 학사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위탁시설의 일부를 목적 외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군수로부터 지원되는 보조금 외에 필요한 경비의 조달을 위하여 입사생으로부터 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3. 학사운영과 관련된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폐지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사전에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학사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수탁자에게 관계자의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위탁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항의 위임을 받아 서울특별시장이 수탁자 선정을 주관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위탁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의 지도·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때
3. 학사를 부실하게 운영하였을 때
4. 위탁조건을 위반할 때
5. 그 밖에 공익상 기숙사를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3조(협의처리) 군수는 학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장과 공공기숙사 운영 참여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여 운영되는 실무협의회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제14조(잔존재산) 군수는 기숙사가 폐지되어 발생하는 잔존재산이 있을 경우 군 세입으로 처리한다.

제15조(준용) 학사의 운영에 따른 보조금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화순군수와 서울특별시장의 체결한 협약과 입사생 선발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화순군 화순학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순군 화순학사 운영 및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사정원 등) 입사정원, 남·여 및 신입생·재학생에 대한 인원배정 등은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다.

제3조(입사기간) 입사생이 화순학사(이하 “학사”라 한다)를 이용하는 기간은 입사일로부터 해당연도 말까지로 한다.

제4조(선발시기 및 공고) ① 입사생은 매년 1월에 정기모집을 통해 선발한다.
② 군수는 매년 입사생 선발요강을 화순군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5조(입사신청) 학사에 입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입사원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신청기간 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입사생 선발) ① 입사생 선발은 「화순군 화순학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6조의 우선순위에 따르며, 같은 순위의 입사신청자는 별표 1에 따라 산정된 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선발한다.

② 학사 입사는 1가구당 1명을 원칙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와 그 자녀, 4자녀 이상 가구는 2명까지 입사할 수 있다. 다만, 입사신청자가 모집정원 미달 시에는 예외로 한다.

③ 입사신청자가 입사정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제1항의 선발순위 결과에 따

라 별지 제2호서식의 예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결원 발생 시 그 순서에 따라 입사시킬 수 있다.

④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학사 운영사정에 따라 군수가 정한다.

제7조(입사생 결정통지 및 등록) ① 군수는 입사생 선발이 결정된 후에는 즉시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입사가 결정된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입사등록원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등록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등록기간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사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입사생 수칙) 군수는 학사 내의 질서유지와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입사생 수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퇴사) 군수는 입사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사 조치할 수 있다.

1. 정학이나 퇴학 처분을 받았을 때
2. 입사생 부담금을 정당한 이유 없이 2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때
3. 법정 감염병 등으로 공동생활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4. 입사등록원서를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5. 입사생 수칙을 위반하여 퇴사요건에 해당될 때
6. 본인이 퇴사를 원할 때

제10조(기타)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학사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학사에 입사된 사람은 이 규칙에 의해 선
발된 것으로 본다.

입사생 선발 배점기준

선발원칙	선 발 기 준	비 고
학업성적 (40)	○ 신입생(대학입시 준비생 포함) ● 수학능력시험 응시자 - 응시과목 백분위 평균점수 ● 수학능력시험 미응시자 - 고교 3학년 1학기 교과목 석차 등급 평균 ○ 재학생 : 전 학기 성적 평점평균	
생활정도 (60)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월 평균 납부액 부 · 모 합산하여 평가	
가산점 (5)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 ② 「장애인복지법」 상 2급 이상 장애인 및 그 자녀 (본인 3급 이상) ③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 ④ 한부모가정 자녀, 소년소녀가장(가정위탁세대) ⑤ 대학생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 자녀	중복 불가
선발평점	학업성적 40점, 생활정도 60점, 가산점 5점	
기 타	입사생 중에 퇴사생이 발생한 경우, 예비자 명부순에 의함	

(앞면)

입 사 원 서

접 수 번 호				
성 명		성 별		사 진 3.5cm × 4.5cm (여권용)
생년월일		출신고교		
대학교명	대학교 대학	학부(과)	학년 (신입생·재학생)	
출신고교명				
휴대전화		E-mail		
보 호 자	주 소			
	성 명		학생과의 관계	
	생년월일		직 업	
	휴대전화		집 전 화	
비 고	※ 대학교명의 학년은 년도 기준 (신입생은 1학년) ※ 구비 서류 : 뒷면 참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개인정보 항목		수집·이용 목적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사진, 성명		본인식별절차에 이용		지원 당해연도 이용 및 3년 보관
학적, 보호자 정보		입사자격 확인		지원 당해연도 이용 및 3년 보관
연락처		특이사항 통보 및 연락		지원 당해연도 이용 및 3년 보관
각종 제출서류		입사생 선발을 위한 평가		지원 당해연도 이용 및 3년 보관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위 제공 사항은 화순학사 입사생 선발 업무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지원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화순군 화순학사에 입사하고자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 원 자

(인 또는 서명)

보 호 자

(인 또는 서명)

화순군수 귀하

(뒷면)

입사원서 구비서류

1. 공통서류(모든 지원자)

연번	제 출 서 류		
1	입사원서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분으로 입사원서 소정 규격
2	보호자 주민등록등본		지원자와 보호자의 주소가 다르면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3	성적증명서	신입생 (대학입시 준비생 포함)	(수학능력시험 응시자)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표 (수학능력시험 미응시자) 고교 3학년 1학기 성적증명서 ※조기졸업자의 학교성적은 2학년 1학기 성적증명서
		재학생	전체학년 성적증명서 ※대학원 신입생은 학사과정 성적증명서 ※편입예정자는 前대학 성적증명서
4	재학증명서	신입생 (대학입시 준비생 포함)	합격증명서, 대학지원수험표, 등록금(예치금)영수증 중 택 1 ※대학입시 준비생의 경우, 입시전문학원 등록증
		재학생	재학증명서, 재적(휴학)증명서, 대학원(편입)지원수험표 중 택 1
5	건강 보험료 납부확인서	부·모 모두가입	①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②모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모 중 한분가입	①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②미가입자(피부양자) 자격득실확인서
		부·모 모두 미가입	부·모 자격득실확인서

2. 가점서류(가점대상자) / 가 ~ 마 중, 택일 1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 : 수급자증명서 1부
- 나. 「장애인복지법」 상 2급 이상 장애인 및 그 자녀(본인 3급 이상) : 장애인증명서 1부
- 다.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 : 국가유공자증명서 1부
- 라. 한부모가정 자녀, 소년소녀가장(가정위탁세대) : 관련 증명서류 1부
- 마. 대학생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추가서류(조례 제7조제1항 제4호 내지 제5호 지원자에 한함)

- 가. 지방대 교환학생 : 교환학교 학생 증명서 1부
- 나. 지방대 연수(실습)생 : 연수 또는 실습생 재직 증명서 1부

예비후보자 명부

작성자 :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illegible]

입사등록원서

주 소					사 진 2.5cm×3cm (증명판)
성 명	(한 자)	성 별	남 · 여		
생년월일	(만 세)				
대학교명	대학교	대학	학과	년 (신입생·재학생)	
보 호 자	성 명			학생과의 관계	
	생년월일			전 화 번 호	
	직 업				
가족상황	학생과의 관계	성 명	연 령	직업(구체적으로)	비 고
첨 부 물	1. 서 약 서 1부 2. 건강진단서 1부				

화순군 화순학사에 입사등록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등 록 자 (인 또는 서명)

화순군수 귀하

서 약 서

본인은 화순군 화순학사에 입사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기숙사의 모든 생활수칙을 준수하며 기숙사 내의 질서유지와 면학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만일, 기숙사 생활이 불량할 경우에는 자진퇴사 할 것이며 또한 기
숙사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 없이 순응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입사생 소 속 : 대학교 대학 과 학년

성 명 : (인 또는 서명)

보호자 주 소 :

성 명 : (인 또는 서명)

화 순 군 수 귀 하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확인서 신청 및 발급취지의 통지를 대장상 소유자나 그 상속인 또는 대장상 전매자나 그 상속인에게 발송을 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13명(붙임참조)

2. 공고기간 : 2021. 01. 28. ~ 2021. 02. 15.(15일간)

3. 공고장소 : 해당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만료시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화순군청 행복민원과(☎061-379-34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조서 1부.

2021. 01. 27.

화 순 군 수

